

# 사범대학 전과 시행지침

제정 2012. 8. 3.

개정 2015. 1. 12.

정리 2015. 2. 6.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과 규정(학칙 제 65조)에 관한 사범대의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전과라 함은 본교 내에서 학생의 학과 또는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소속을 변경하여 다른 학과에 소속함을 말한다.

**제3조 (전과 지원 시기 및 지원 자격)** (1) 전과 지원 시기는 매 학년도말로 한다.

(2) 전과의 지원 자격은 4회 이상 등록하고 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3학년 수료학점(98학점)에 미만이 되는 자로 한다. 단, 전과 지원시의 취득학점이며, 계절학기 이수 중 인 학점은 제외한다.

[정리 2015.2.6.]

**제4조 (허용범위)** 전과를 허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범계는 사범계 각 학과 상호간에만 허용한다. 단,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자는 전과를 할 수 없다.

(2) 전출은 학과별 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3) 전입은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시행한다.[개정 2015.1.12.]

(4) 지원 학과는 1개 학과로 제한하며 이중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 학과 모두를 취소한다.

**제5조 (원서제출 및 절차)** (1)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과장의 승인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원서를 지원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2) 전과 신청을 받은 학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형을 거쳐 적격자를 선정, 전공학점 인정표(동일, 대체교과목에 한함)를 첨부하여 학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 (재학연한)**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제7조 (교과이수)** 전과한 후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학과의 교과이수 원칙에 따른다.

## 부칙<2015.1.12.>

(1) 이 지침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2014학년도 전과생부터 적용한다.

※ 정리<2015.2.6.> : 학칙개정(2015.2.6.)에 따른 반영 제3조 2항 학점 66학점->65학점 변경